

NH-Amundi HANARO 원자력iSelect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U847)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으로 상장폐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HANARO 원자력iSelect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테마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자력을 테마로 하여, 원자력 관련 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합니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사건 및 사고, 보안 위반, 의도하지 않은 테러 행위, 항공 충돌, 자연 재해(홍수 또는 지진과 같은), 장비 오작동 또는 원자력 관련 물질의 저장, 취급, 운송, 처리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방사능 오염 또는 노출 발생시, 일반 대중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천연가스나 석유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과 가격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에너지원간 가격경쟁 결과에 따른 소비자 수요 변화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수익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자력 활동은 주로 원자력 안전,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 국가 보안(특히 테러 위협)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재심사 등을 요구하는 규제 대상입니다. 산업전반의 규제 강화는 운용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성 및 원자력 관련 운영 사업의 수익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 및 생산 환경 등의 변화에 의한 원자력의 주원료인 우라늄의 가격 변동, 혹은 대체에너지인 수력 발전, 원유, 천연 가스 및 전기 등의 가격 변동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iSelect 원자력 지수 와 관련된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구성종목 선정방식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AI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 관련 산업 노출도가 높은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다만, 종목 선별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해당 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데이터マイ닝 기술의 한계로 해당산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발행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민감하므로, 이에 따른 거래량의 급속한 감소 및 급격한 가격하락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주 투자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의 영업점과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과세의 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집합투자기구</td> <td style="padding: 5px;">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td> </tr>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u>2025년 12월 17일</u>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